

보조금교부 결정통지서

- 수 신 :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장(광역푸드뱅크센터)
- 교부금액 : 금118,110,000원(금일억일천팔백일십일만원)
- 교부내역 : 2019 제4분기 광역푸드뱅크센터 민간위탁금

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의 금액을 아래와 같은 조건을 붙여 「2019 제4분기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원 민간위탁금(광역푸드뱅크센터 민간위탁금)」으로 교부 결정 통지합니다.

▶ 교 부 조 건 ◀

- (1) 당해, 광역푸드뱅크센터 민간위탁 보조금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광역푸드뱅크센터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원을 위한 인건비, 운영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목적 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 함.
- (2) 집행완료 후 정해진 기일 내('20.2)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함.
- (3) 기타 관계법규 및 우리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.

2019. 10. 8.

서 울 특 별 시

